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II. 주요내용

- 2025년도 평창군 기금조성 규모는 총 8개 기금 25,73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 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 성 액(a)	2025년 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 성 액 (①=a+②-③)	증 ④=①-②
		수입 ②	지출 ③		
합 계(8건)	25,220,259	4,313,808	3,800,714	25,733,353	513,09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78,829	2,502	0	81,331	2,50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531,048	366,088	0	11,897,136	366,088
평창군자활기금	515,008	15,805	28,000	502,813	△12,195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662,809	302,000	0	964,809	302,000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2,205,880	552,000	852,000	1,905,880	△300,000
평창군옥외 광고발전기금	218,824	29,420	0	248,244	29,420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1,182,228	529,278	650,000	1,061,506	△120,722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113,899	33,608	31,746	115,761	1,862
평창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8,711,734	2,483,107	2,238,968	8,955,873	244,139

III. 기금개요

□ 기금조성 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로 202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5,73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3백만원 증가

□ 기금운용계획 총괄¹⁾

- 2025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총 29,534백만원이며,
 - 세입은 전입금 3,000백만원, 보조금 20백만원, 예치금 회수 25,220백만원, 이자수입 759백만원, 기타수입 535백만원 임.
 - 세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3,776백만원, 용자성 사업비 25백만원, 예치금 25,733백만원 임.

□ 기금별 운용계획

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과)

- 설치목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
- 기금운용계획
 -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81,331	합 계	81,331
예치금회수	78,829	예치금	81,331
이자수입	2,502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9백만원, 이자 수입 3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81백만원 임.

1)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합계가 차이가 있음

나.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과)

- 설치목적: 재정불균형 조정, 대규모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방채 상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안정적 재정운영
- 기금운용계획
 -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11,897,136	합 계	11,897,136
예치금회수	11,531,048	예치금	11,897,136
이자수입	366,088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1,531백만원, 이자 수입 366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11,897백만원 임.

다. 평창군자활기금(복지정책과)

- 설치목적 : 저소득 주민의 자립 · 자활 촉진(2022년 설치, 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530,813	합 계	530,813
예치금회수	515,008	비용자성사업비	3,000
이자수입	15,805	융자성사업비	25,000
		예치금	502,813

- ▶ 수입은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515백만원, 이자수입 16백만원이며,
- ▶ 지출은 사업자금대여 15백만원, 자활 성공수당 지원 2백만원, 자활 조성자금 대여 10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1백만원, 예치금 503백만원 임.

라. 평창군고향사랑기금(세정과)

- 설치목적 :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2023년 설치, 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964,809	합 계	964,809
예치금회수	662,809	예치금	964,809
이자수입	2,000		
기타수입	300,000		

- ▶ 수입은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663백만원, 기부금 300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965백만원 임.

마. 평창군체육진흥기금(올림픽체육과)

○ 설치목적 : 평창군 체육진흥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 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2,757,880	합 계	2,757,880
전입금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852,000
예치금회수	2,205,880	예치금	1,905,880
이자수입	52,000		

- ▶ 수입은 전입금 50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206백만원, 이자 수입 52백만원 임.
- ▶ 지출은 평창군수기 전국궁도대회 50백만원, 평창군수기 전국리틀야구대회 100백만원, 평창오대산천장사 씨름대회 200백만원,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및 기업은행배 전국대회 150백만원, 평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 30백만원, 평창군수배 전국 바이애슬론스키대회 30백만원 등과 예치금 1,906백만원 등 임.

바. 평창군외광고발전기금(도시과)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지원(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248,244	합 계	248,244
예치금회수	218,824	예치금	248,244
이자수입	5,066		
기타수입	24,354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219백만원, 신고 수수료 24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248백만원 임.

사. 평창군재난관리기금(안전교통과)

○ 설치목적 :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1,711,506	합 계	1,711,506
전입금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650,000
예치금회수	1,182,228	예치금	1,061,506
이자수입	29,278		

- ▶ 수입은 전입금 50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182백만원, 이자수입 29백만원이며,
- ▶ 지출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00백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150백만원, 재난 · 재해예방사업 150백만원, 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50백만원, 일반예치금 211백만원, 의무예치금 851백만원 임.

아. 평창군식품진흥기금(보건정책과)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147,507	합 계	147,507
보조금	20,100	비용자성사업비	31,746
예치금회수	113,899	예치금	115,761
이자수입	3,508		
기타수입	10,000		

- ▶ 수입은 보조금 2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14백만원, 이자수입 4백만원, 과징금 10백만원 임.
- ▶ 지출은 지역대표 음식 홍보비 3백만원, 유통망구조점 쓰레기봉투 지원 외 4개 사업에 25백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 4백만원, 예치금 116백만원 임.

자.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유통과)

- 설치목적 :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존속기한 2024.12.31.)
- 기금운용계획

▶ 수입 · 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합 계	11,194,841	합 계	11,194,841
전입금	2,000,000	비용자성사업비	2,238,968
예치금회수	8,711,734	예치금	8,955,873
이자수입	283,107		
기타수입	200,000		

- ▶ 수입은 전입금 2,000백만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8,712백만원, 이자수입 283백만원,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200백만원이며,
- ▶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2,239백만원, 예치금 8,956백만원 임.

IV. 검토의견

- 2025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513백만원이 증가한 25,733백만원 임.

○ 2025년도말 조성액을 기금별로 보면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1백만원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1,897백만원
▶ 평창군자활기금	503백만원
▶ 평창군고향사랑기금	965백만원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1,906백만원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48백만원
▶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062백만원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16백만원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956백만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29,534백만원으로

- ▶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25,220백만원(85.39%), 전 입금 3,000백만원(10.16%), 이자수입 759백만원(2.57%), 기타수입 534백만원(1.81%), 보조금 20백만원(0.07%)이며,
- ▶ 지출은 예치금이 25,733백만원(87.13%), 자활성공수당지원 등 2건의 자활사업, 2025년 강원자전거대행진 등 20건의 체육진흥사업, 으뜸음식점 지원 등 위생업소 개선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3,776백만원(12.78%), 자활 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백만원(0.08%)으로 계획되어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기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은 없습니다.

▶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명	존속기한	관련규정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9. 12. 31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평창군자활기금	법정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평창군고향사랑기금	법정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028. 10. 16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3조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법정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평창군재난관리기금	법정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평창군식품진흥기금	법정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29. 12. 31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을 보면,

- ▶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예치금 적립만 편성되어 있으며 그 외 홍보물 제작 등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담례품 등 각종 비용은 일반회계에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담례품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에는 담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 특례규정²⁾에는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

2) 부칙 <조례 제2806호, 2022.11.18.>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규정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 자치법규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 자치법규를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³⁾으로 부칙에 두는 특례는 시행일이 도래하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잠정적·임시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향사랑기금의 최초 개시 사업연도는 2023년으로 특례적용 기한이 끝난 점, 담례품 비용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점, 기금이 특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련 법규 제정 시 취지⁴⁾인 점을 볼 때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전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 기금을 충분히 조성하지 못한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 2024년도 10월 기준 모금액은 250백만원으로 2023년도 407백만원 대비 38.6%가 감소한 반면 모금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보도⁵⁾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본질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모금을 위해 너무 많은 기회 비용들이 소요되지 않고 기부금 유치가 홍보 및 담례품 등 비용 지출과 비교해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 목표사업을 정한 후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거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2편 세부입안기준 제3장 부칙규정

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고향사랑기부 편의팀 확인

5) KBS뉴스 고향사랑기부금 1년…배보다 배꼽이 큰 강원도(2024.02.02. 보도)

▶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액	비고
기부금수입	합계	249,736	10.31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액	249,736	
비용	합계	318,140	2회주경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130,000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담례품	120,000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시상금	6,000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공급 위탁금	44,000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운영비	18,140	

※ 담당자 인건비, 여비 등 비용에 미포함

○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 ▶ 2024년도에는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인 200백만원의 104%를 달성하여 현수막 게시대 2개소(대관령면, 미탄면)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 말에도 219백만원을 조성하여 목표액의 109%에 도달하였으나 2025년도 지출계획에 예치금만 편성하고 2026년 이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 뿐만 아니라 광고물 부착 금지표지판, 미디어 사업 등 기금의 조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도별 지출계획(예치금 제외, 당초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지출계획	예산액	비고
2025년	없음	0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지원	20,000	
2023년	없음	0	
2022년	없음	0	
2021년	없음	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⁶⁾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하여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 행정안전부의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점검 결과가 12월에 통보되어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 제출이 어려운 점은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6)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